

[학교폭력분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기준과 그에 대한 불복방법



학교폭력의 예방, 사건 발생 시의 대응, 대책을 위하여 각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합니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2조).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학폭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게 됩니다(법 제17조).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 인지 여부	
관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내 선도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1~3점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 가해 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 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 14조제 5항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및 모욕 행위 등의 금지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 연계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심리 치료		가해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환경개선(변화)	교내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교외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피해 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모욕 행위일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각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다만, 학폭위의 심의과정에서 유사사례에 대한 판례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 결과에 대해 논란이 생기기도 하고, 당사자 및 보호자들이 그 결과를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의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추어 재심이나 행정심판, 법원에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재심절차

가. 피해학생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시·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나. 가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전학조치(제8호) 또는 퇴학처분 조치(제9호)**에 대하여서만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 행정심판절차

가. 재심을 거친 경우

재심절차를 담당하는 시·도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재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의2 제4

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3항).

나. 재심을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기에 재심을 거친 경우와는 달리 학교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조치는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 가능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행정청이라 볼 수 없기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9호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행정심판은 학교장의 조치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3. 소송절차

가. 재심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심절차를 담당하는 시·도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위 국·공립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의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나. 재심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공립학교장의 조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가.항과 동일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조치에 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만일 학교장의 조치가 위법하며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립학교와 재학생의 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용일 변호사

조사자문,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화해계약, 합의, 공탁 등 One-Stop 대응

T. 02-591-0657 E. kyi@kasanlaw.com H. www.kasanlaw.com